

대 법 원

제 2 부

결 정

사 건 2026모1971 재판확정기록 열람등사 거부처분 취소·변경 기각
결정에 대한 재항고

재 항 고 인 재항고인
대리인 변호사 안미영

원 심 결 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. 6. 19. 자 2026보15 결정

주 문

원심결정을 파기하고,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.

이 유

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.

1. 사안의 개요

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.

가. 재항고인이 당사자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가단110357 사건에서, 재항고인은 재판 확정 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보관하고 있는 재항고인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합1099 사건의 기록(이하 '이 사건 형사재판확정기록'이라 한다)에 대하여 2026.

4. 30.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였다. 위 문서송부촉탁신청은 채택되었고, 2026. 5. 7. 그에 따른 문서송부촉탁서가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에 송달되었다.

나. 재항고인은 위 문서송부촉탁에 의한 송부 대상 문서의 특징을 위하여 2026. 5. 14.경 이 사건 형사재판확정기록 중 인증등본 대상 문서를 지정하여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에 열람·등사를 신청하였으나, 담당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 본문 제3호의 사유로 이를 불허하고 2026. 6. 2.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가단110357 사건의 담당 법원에 문서송부촉탁에 불응한다는 취지와 그 사유를 통지하였다.

다. 재항고인은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6항에 따라 검사의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.

2. 관련 법리

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1항은 "누구든지 권리구제·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."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신청방식이나 절차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, 누구든지 형사재판확정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다는 뜻을 명시적·확정적인 방법으로 밝혔다면 적법한 신청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(대법원 2012. 3. 30. 자 2008모481 결정, 대법원 2023. 6. 27. 자 2023모1221 결정 참조).

3. 판단

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.

가. 재항고인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가단110357 사건의 변론 과정에서 증거제출 등 권리구제 목적으로 이 사건 형사재판확정기록에 대하여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한 후

위 신청이 채택되자 이 사건 형사재판확정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에 그중 송부를 원하는 문서를 특정하여 열람·복사를 신청하였다.

나. 그렇다면 재항고인은 이 사건 형사재판확정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·등사를 신청한다는 뜻을 명시적·확정적인 방법으로 밝힌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,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1항에 따른 적법한 신청을 한 것이다.

다. 그럼에도 이와 달리 재항고인이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형사재판확정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·등사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의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6항에 따른 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에는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1항, 제6항을 위반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. 환송 후 원심은 재항고인이 열람·등사를 신청한 소송기록에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 본문 각 호의 열람·등사 제한 사유가 있는지, 같은 항 단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등을 심리하여야 할 것이다.

4. 결론

원심결정을 파기하고, 사건을 다시 심리·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2026. 8. 12.

재판장	대법관	박영재
	대법관	오경미
주심	대법관	권영준
	대법관	엄상필